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유재산 특례 존속기한 연장〉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11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국유재산 특례 존속기한 연장 등 (안 별표 제5호·제15호·제18호·제24호·제25호·제37호·제82호·제89호·제90호·제91호·제106호·제107호·제153호·제188호·제190호·제206호·제214호)	2
2.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5호)	12
3.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5호)	17
4.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8호)	22

5.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24호)	25
6.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25호)	28
7.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제37호)	32
8.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82호)	33
9.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89호)	36
10.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90호)	41
11.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91호)	45
12. 실증시험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제106호)	49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제107호)	53
1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53호)	58

15.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제188호)	62
16.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190호)	63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206호)	66
1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안 별표 제214호)	69
19. 부칙	7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정부 제출

나. 제 안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1. 총괄: 국유재산 특례 존속기한 연장 등

(안 별표 제5호·제15호·제18호·제24호·제25호·제37호·제82호·제89호·제90호·제91호·제106호·제107호·제153호·제188호·제190호·제206호·제214호)

현 행	개 정 안
○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 (제15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5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 (제18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8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 (제24호)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4호)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 (제25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5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 (제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6.12.31.	○ (제3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6.12.31.
○ (제82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82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현행	개정안
○ (제89호)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89호)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 (제90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90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 (제91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91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 (제106호) 실증시험을 위하여 시설을 개발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06호) 실증시험을 위하여 시설을 개발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 (제107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07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 (제153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53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 (제188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존속기한: 2029.12.31.	○ (제188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존속기한: 2029.12.31.
○ (제190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190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 (제214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14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운용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 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존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의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5년, 일반재산의 대부는 대부 재산의 목적 및 성질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25년 8월 기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182개 법률-217개 규정’을 국유재산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특례의 2024년 유형별 운용실적을 살펴보면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총 1조 2,332억원(① 사용료 감면 1조 2,139억원, ② 양여 193억원)³⁾이고, ‘국유재산특례 운용실적 대상 재산(장부가액 기준)’은 총 19.7조원임[① 사용료 감면 18.4조원(320km²), ② 양여 193억원(0.03 km²), ③ 장기사용허가 1.3조원(5.3km²)].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실적)	2025년(전망)
특례총지출	1,233,164	1,136,864
사용료감면	1,213,904	1,037,123
양여	19,260	99,741

자료: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 대상 재산 현황]

(단위: 천 m², 백만원)

구분	토지		건물		기타		합계	
	면적	장부가액	면적	장부가액	면적	장부가액	면적	장부가액
사용료 감면	315,756	13,915,668	4,382	3,655,182		814,014	320,138	18,384,864
양여	10	6,137	19	13,123			29	19,260
장기 사용	4,895	1,051,100	429	236,029			5,324	1,287,129

자료: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3)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사용료감면 및 양여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장기사용허가는 제외함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에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 존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가내용
효과성 (50)	목적달성도 (10)	○ 특례가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활용계획(20) 및 실적(10)	○ 최근 3년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실적 ○ 향후 3년간 특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특례의 활용 가능성 평가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10)	○ 특례 운영실태점검 결과 등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특례 소관 부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타당성 (50)	정부정책·법령상 필요성 (30)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특례지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시 현재 상황에서도 특례 지출 법적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	○ 재정지출, 세제지원 등 다른 지원수단과 비교 시 지원방법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관련 지원시책 간 비교(10)	○ 국유재산특례 지원 대상 및 목적 고려 시 국유재산 특례를 통한 지원의 적절성 ○ 특례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 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연장하고, ② 특례 활용 실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례는 ‘3년’만 연장하며, ③ 법률명 변경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3건의 제명을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또한,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7개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에 규정된 특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특례 유효기간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황]

구분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특례대상	존속기한
존치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2033. 12. 31.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국립공원공단	2030. 12. 31.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사용료등의 감면	자활복지개발원	2030. 12. 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용료등의 감면	소년보호협회	2030. 12. 31.
	8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사업시행자	2030. 12. 31.
	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단지 개발 목적 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등	2033. 12. 31.
	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2033. 12. 31.
	1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사용료등의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	2030. 12. 31.

	19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한국사학진흥재단	2033. 12. 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사용료등의 감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30. 12. 31.
조건부 존치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용료등의 감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기관법안단체	2028. 12. 31.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지역자활센터	2028. 12. 31.
	106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사용료등의 감면	실증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	2028. 12. 31.
	107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2028. 12. 31.
	2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국내복귀기업	2028. 12. 31.
제명 변경	3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사용료등의 감면	기능대학 설립·경영자	2026. 12. 31.
	188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9. 12. 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유효기간 일원화]

연 번	개 정 안	개 별 법 률 존 속 기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존속기한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028.12.31	2025.12.31.
18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	2025.12.31.	2025.12.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24.12.31.	2025.12.31.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10년 (2031.9.15.)	2031.12.31.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5년 (2027.2.17.)	2027.12.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	2025.12.31.	2025.12.31.
213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10년 (2027.6.27.)	2026.12.31.

또한, 정부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였는데,

9개 특례에 관하여 “최근 특례 실적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합리적 추정 곤란” 사유로 추계를 실시하지 않았고, 비용 추계가 진행된 6개 특례의 경우 국유재산특례에 따라 연평균 131억 2,000만원 규모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경제자유구역 주요 입주기업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5호)		추	정	곤	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5호)		추정	곤란				
국립공원공단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8호)	△6	△6	△6	△6	△6	△30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24호)	△314	△314	△314	△314	△314	△1,570	△314
지역자활센터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25호)	△13	△13	△13			△39	△13
한국소년보호협회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82호)	△160	△160	△160	△160	△160	△800	△160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89호)		추	정	곤	란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90호)		추	정	곤	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91호)		추	정	곤	란		
소재·부품·장비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06호)		추정	곤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07호)		추정	곤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53호)	△2,227	△2,227	△2,227	△2,227	△2,227	△11,135	△2,227
한국과학진흥재단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190호)		추	정	곤	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206호)	△10,400	△10,400	△10,400	△10,400	△10,400	△52,000	△10,400
국내복귀기업 사용료등 감면 특례(별표 제214호)		추정	곤란				
소 계(B)	△13,120	△13,120	△13,120	△13,107	△13,107	△65,574	△13,120

자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
장 필요성을 살펴봄.

2.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5호)

현 행	개 정 안
○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강원, 광주, 울산 9개가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024년말 신고 기준, 누적)는 238억 달러이며, 국내외 기업 8,266개소(2023년 기준)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

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연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 사용허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입주기업(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유재산특례를 받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⁶⁾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5호)

현 행	개 정 안
○ (제15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5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은 “국가가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⁷⁾”으로, 광주광역시도 현대자동차와 협업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12개 지역이 선정된 상황임.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현황]

구분	지역	개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광주	(협약체결) 2019.1. / (선정) 2019.6. ○ 수도권에 비해 산업여건 및 기업 고용여력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광주를 떠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냄
	횡성	(협약체결) 2019.8. / (선정) 2020.10. ○ 완성차 업체인 디피코를 중심으로 8개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연구) 조합*을 결성하고, 기업간 협업하여 초소형 전기차 공장 신설, 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밀양	(협약체결) 2019.6. / (선정) 2020.10. ○ 주민과의 환경갈등으로 입지불안정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이 노사민정 상생을 통해 막혀있던 고용과 투자 창출
	군산	(협약체결) 2019.10. / (선정) 2021.2. ○ 새만금산단등을 활용한 중견·벤처기업(명신/에디슨모터스 등 5개사)이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부산	(협약체결) 2020.2. / (선정) 2021.2. ○ (주)코렌스 EM에서 독일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개발·생산하고, 20개 중소기업과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구미	(협약체결) 2019.7.(1차) 2021.11.(2차) / (선정) 2020.12. ○ LG화학이 자회사인 LG BCM(Battery Core Material)을 설립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첨단소재산업의 생산 거점 마련 및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 체결	대구1	(협약체결) 2019.6. ○ 이레AMS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일자리 지키기와 신규 일자리 확대 (지역 부품업체와의 상생 등 추진)
	대구2	(협약체결) 2021.11. ○ E-바이크, AI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생산 계획인 (주)대동, (주)대동 모빌리티와 협력기업 간 상생 등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혁신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신안	(협약체결) 2021.2. ○ 발전사,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논산	(협약체결) 2022.1. ○ CJ제일제당, 한국야쿠르트 등 11개사 지역식품기업의 수평적·상생적 연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지역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모
	익산	(협약체결) 2022.1. ○ 식품산업의 중심도시로 식품기업(하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농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기업과 지역간의 상생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	(협약체결) 2022.1. ○ 국내 탄소기업간(효성첨단소재(주), (주)테크카본, (주)KGF) 공동 R&D 및 신제품 개발장비 공동활용과 신소재 산업으로의 공동 판로개척 등을 통해 국내 탄소소재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자료: 일자리위원회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연장하여 지역 주도의 노·사·민·정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참여 기관·법인·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로 3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유재산특례 실적 미흡하더라도 기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만큼, 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

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수의 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신청, 선정, 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 기한 연장

(안 별표 제18호)

현 행	개 정 안
○ (제18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8호)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립공원 보전,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복원, 공원시설 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 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국립공원공단법」은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금

등 다양한 재정지원⁹⁾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국립공원 공단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9조¹⁰⁾는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9) 「국립공원공단법」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4.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6. 자연공원의 청소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10.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24호)

현 행	개 정 안
○ (제24호)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4호)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019년 설립되어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 등을 수행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국유재산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3은¹²⁾ 자활복지개발원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자활복지개발원의 업무) ①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개발 및 평가
2.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 취업·창업에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국가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자활복지개발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6.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25호)

현 행	개 정 안
○ (제25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5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역자활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단체¹³⁾를 가리키며, 전국 250개 단체가 지정되어 있음.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지역자활센터 지부별 현황]

(단위: 개소수)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지부명	지역자활센터 개수
강원지부	18	서울지부	30
경기지부	33	울산지부	5
경남지부	20	인천지부	11
경북지부	19	전남지부	23
광주지부	9	전북지부	17
대구지부	10	제주지부	4
대전지부	5	충남세종지부	16
부산지부	18	충북지부	12
합계		250	

자료: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 법인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수)

법인	지역자활센터 개수	법인	지역자활센터 개수
종교법인	7	재단법인	46
사회복지법인	76	사단법인	59
비영리민간단체	14	학교법인	4
지방자치단체	8	기타	4
사회적협동조합	32		
합계		250	

자료: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자활 교육, 취업알선 등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 및 사업

수행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¹⁴⁾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로 한정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같은 조 제1항¹⁵⁾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로 3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유재산특례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기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과 적정성이 인정된 만큼, 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인용 조문 정비 (안 별표 제37호)

현 행	개 정 안
○ (제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6.12.31.	○ (제3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6.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37호의 근거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2021.8.17. 일부개정, 2022.2.18.시행) 되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정 전 법률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인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37호 근거 법률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명확성 및 법령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임.

8.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
기한 연장
(안 별표 제82호)

현 행	개 정 안
○ (제82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82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감독 하에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수행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한국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활동 및 사회정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범죄 예방 및 건전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¹⁶⁾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소년보호협회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¹⁷⁾은 소년보호협회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2. 자립지원시설 운영 등 소년원 출원생의 사회정착 지원
3. 청소년 관련 연구, 자료 발간, 학술단체 지원
4. 청소년 관련 선도·복지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② 소년보호협회의 설치, 조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소년보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 및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협회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5항의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년보호협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9.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89호)

현 행	개 정 안
○ (제89호)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89호)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 등)과 관련시설(교육·연구·업무·지원시설 등)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¹⁸⁾, 2025년 2분기 기준 국가단지는 53개, 일반산업단지는 752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51개, 농공단지는 485개가 지정됨.

[2025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단위: 개, 천㎡, 명)

구분	단지수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입주업체	고용	누계생산 (백만원)	누계수출 (천달러)
국가	53	313,302	67,088	1,093,725	359,853,896	113,847,446
일반	752	352,745	49,919	1,107,619	286,761,483	93,507,713
도시첨단	51	192,370	3,311	26,507	2,129,136	262,687
농공	485	59,077	8,562	154,669	35,345,720	7,032,740
총합	1,341	917,494	128,880	2,382,520	684,090,235	214,650,586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면제 등 국유재산 특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국가 산업 육성 및 균형 있는 국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규정¹⁹⁾을 두지 않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는 특례 대상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가 지정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

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①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농공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

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0.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90호)

현 행	개 정 안
○ (제90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90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조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로, 공공기관,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²⁰⁾.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연장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입주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 사용허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²¹⁾에 따른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업단지의 임대기간 등의 기준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①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② 제46조의6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이 종료될 때에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46조의6에 따라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1. 대학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91호)

현 행	개 정 안
○ (제91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91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에 따라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2019년에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9개소가 선정되었음.

[캠퍼스 혁신파크 연도별 선정 현황]

선정 연도	선정 개수	선정 대학교
2019년	3개소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2021년	2개소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2022년	2개소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
2023년	2개소	단국대학교(천안), 부경대학교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²²⁾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연장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대학 내 산학 협력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임대 목적 건물의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규정²³⁾을 두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 사용허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셋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정하고 있고, 동 특례의 요건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 등이 요구²⁴⁾된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교지의 일부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학교 교지의 총 면적에서 해당 교지의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4에 따른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할 것
3. 해당 교지의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것

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대학 교지가 아닌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임대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사용 또는 대부 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 실증시험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국
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별표 제106호)

현 행	개 정 안
○ (제10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라 실증시험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06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라 실증시험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6호의 근거 법률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실증시험등을 위해 시설을 개발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 개방을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수요기업이 해당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정부가 실증시험 시설 구축·운영 비용 등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²⁵⁾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실증시험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

2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49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로 3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유재산특례 실적 미흡하더라도 기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만큼, 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6호의 근거 법률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명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2023.6.13.일부개정, 2023.6.13.시행)되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정 전 법률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인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6호 근거 법률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명확성 및 법령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실증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제49조에 따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하여 실증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요기업이 해당시설의 개방·운영계획, 구매의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수요기업에 대해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및 공유의 시설, 설비, 기계, 기기 및 지식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운영
2.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기술에 대해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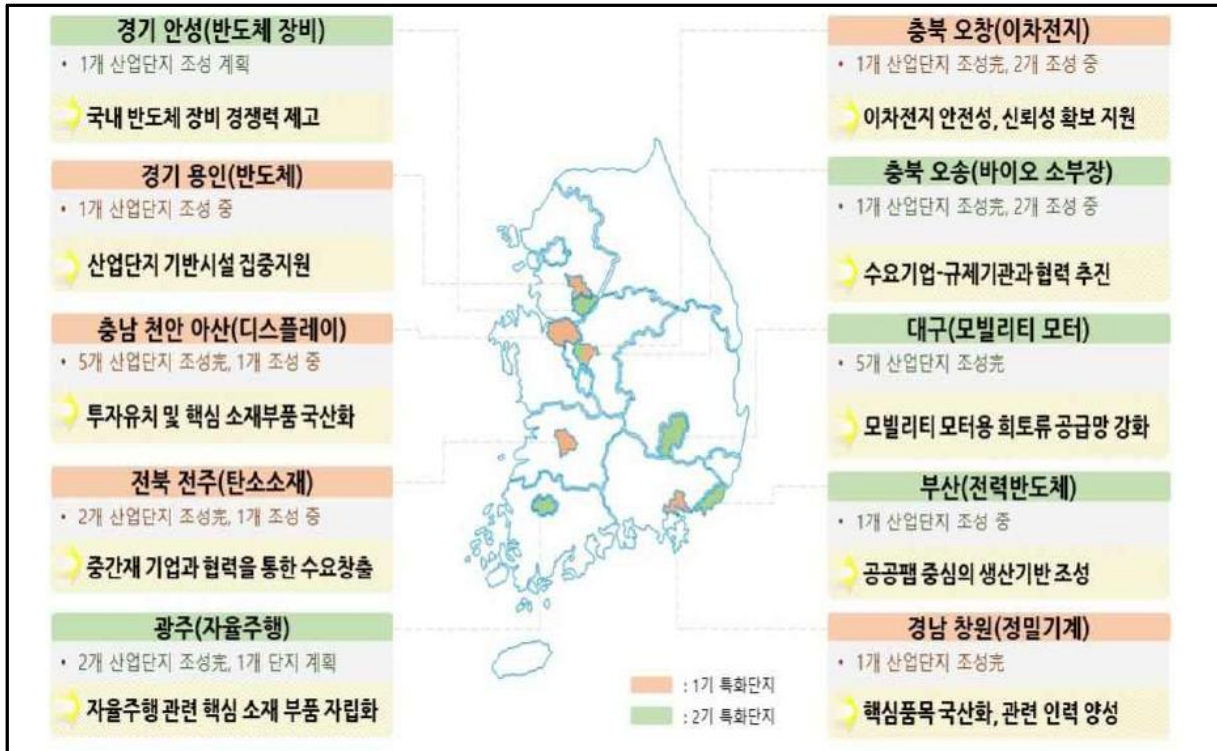
1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별표 제107호)

현 행	개 정 안
○ (제107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07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7호의 근거 법률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것임.

참고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2021년 용인(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디스플레이), 창원(정밀기계), 전주(탄소소재) 등 5개 단지, 2023년 안성(반도체장비), 부산(전력반도체), 오송(바이오소부장), 대구(모빌리티모터), 광주(자율주행) 등 5개 단지가 지정되어 총 10개 단지가 지정된 상황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현황]



자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특화단지 입주를 촉진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²⁶⁾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는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을 현재 지정된 10개소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입주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²⁷⁾에서 특화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제68조(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화단지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적, 인력 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로 3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유재산특례 실적 미흡하더라도 기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만큼, 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7호의 근거 법률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명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2023.6.13.일부개정, 2023.6.13.시행)되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정 전 법률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인용하고 있음.

7. 그 밖에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 받으려는 특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06호 근거 법률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명확성 및 법령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53호)

현 행	개 정 안
○ (제153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153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전국에 24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창업보육센터 현황]

(단위: 개소수)

지 역	센터수	지 역	센터수
강원	14	세종	3
경기	49	울산	0
경남	16	인천	5
경북	21	전남	13
광주	9	전북	15
대구	11	제주	4
대전	9	충남	15
부산	15	충북	14
서울	29	합계	242

자료: 중소벤처24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것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유재산특례를 통한 사용료 감면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입주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셋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현재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242개소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²⁸⁾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는 것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측정기기 등의 장비

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5.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인용 조문 정비 (안 별표 제188호)

현 행	개 정 안
○ (제188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존속기한: 2029.12.31.	○ (제188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 존속기한: 2029.12.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88호의 근거 법률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법률명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2021.7.27.일부개정, 2022.1.28.시행) 되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정 전 법률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인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88호 근거 법률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의 명확성 및 법령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임.

16.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190호)

현 행	개 정 안
○ (제190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25.12.31.	○ (제190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 2033.12.31.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989년에 설립되어 각급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금 조성·운용,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연장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사학진흥기금에 정부가 출연²⁹⁾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 사용허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셋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그 요건도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을 명시³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학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사학지원계정 및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206호)

현 행	개 정 안
○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06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 2030.12.31.

개정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사용료 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에 개원³¹⁾하여 환경기술 개발사업 실용화 촉진 및 환경기술 연구지원 등을 수행함.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특례를 연장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하여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31) 2005년 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법정법인화 되었고, 2008년에 각 기관을 통합하기로 결정하여 2009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원

둘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국가가 기술원의 운영에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³²⁾,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에 더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그 요건도 기술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시³³⁾하고 있

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가가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3.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6.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8.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9.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1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13.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14.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15.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16.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을 감안할 때 존속기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술원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1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연장
(안 별표 제214호)

현 행	개 정 안
○ (제214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5.12.31.	○ (제214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 2028.12.31.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대한 국유재산특례(장기 사용허가등 및 사용료등의 감면) 존속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참고로, 국내복귀기업은 ①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②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의미하며³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58개 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됨³⁵⁾.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 연장

3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35)산업통상자원부_국내복귀기업 선정 현황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 연장의 공익성은 인정됨.

둘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규정³⁶⁾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보전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 사용허가의 타당성 또한 인정됨.

셋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특례 대상을 ‘국내복귀기업’으로 한정하고, 법률에서 ‘국내복귀’ 및 ‘국내

3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복귀기업'을 정의 규정³⁷⁾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경우 실적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로 3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유재산특례 실적이 미흡하더라도 기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그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 만큼, 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존속기한 설정 원칙(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임.

3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채류 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하고 있을 것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할 경우

나.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국내복귀기업에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9.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국유·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을 “개정규정(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제21조”를 “제21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제105조의 개정규정(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②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7개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에 규정된 특례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특례 유효기간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유효기간 일원화]

연 번	개 정 안	개 별 법 률 존 속 기 한	국 유 재 산 특 례 제 한 법 존 속 기 한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2028.12.31	2025.12.31.
18	「국립공원공단법」 부칙제2조	2025.12.31.	2025.12.31.
8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24.12.31.	2025.12.31.
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시행일부터 10년 (2031.9.15.)	2031.12.31.
16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제2조	시행일부터 5년 (2027.2.17.)	2027.12.31.
2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제2조	2025.12.31.	2025.12.31.
213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제2조	시행일부터 10년 (2027.6.27.)	2026.12.31.

① 개정안은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도 하위법령 개정이 요구되지 않고 2025.12.31. 이전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³⁸⁾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더라도 해당 유효기간은 효력이 없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유효기간은 법 집행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공단법」 부칙 제2조) <u><삭 제></u>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u><삭 제></u>
○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827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1조(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2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u><삭 제></u>
○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 (법률 제1451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국·공유재산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

현행	개정안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일부터 10 년간 효력을 가진다.

문의처
02)6788-5150